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‘수급자격인정 철회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’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9. 8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



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2. 근 거 :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, 제29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송달불능사유	주소
윤*효	1999.01.02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상담을 위한 출성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두절로 인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폐문부재	속초시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 : 2026. 9. 8. ~ 2026. 9. 22. 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 장영춘(Tel. 033-630-190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